

의안번호	제20호
의결 년월일	2026. 3. 19. (제335회)

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금 산 군 수
제출년월일	2026. 3. 5.

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

제20호

제출년월일 : 2026. 3. 5.

제 출 자 : 금 산 군 수

1. 제정이유

- 저출생·고령화로 인한 지속적 인구 감소 및 유출을 극복하고자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각종 지원시책 수립·시행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 활력을 높여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총칙
 -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 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 -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 ~ 6조)
 -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(안 제7조)
-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
 -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 및 발급 (안 제8조 ~ 9조)
 - 금산군 생활군민에 대한 혜택 (안 제10조 ~ 11조)
 - 생활군민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(안 제12조)
- 보칙
 -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 (안 제13조 ~ 14조)
 -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여에 대한 포상 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(정의)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6조(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15조(생활인구의 확대 지원)
- 「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)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
○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○ 규제심사,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6. 1. 30. ~ 2. 20. / 21일간

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,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활인구”란 금산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금산군 생활주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군에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
 - 나.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
 - 다. 「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카드형 또는 모바일 금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

라.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

마. 그 밖에 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사람

3. “금산군 생활주민 등록제”란 군에 거주하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군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)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생활인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
2.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
3.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

4.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
 5.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 6.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 수립)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제7조(생활인구 사업 추진)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도시·농촌 교류 사업
2.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
3. 제8조에 따른 금산군 생활주민 등록제 운영

4.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

5.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

6.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

7.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)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금산군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금산군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⑤ 군수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군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

할 수 있다.

⑥ 군수는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증 발급)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증(이하 “등록증”이라 한다)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금산군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③ 등록증의 발급절차, 유효기간, 등록취소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제10조(혜택)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금산군 생활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군의 연간 행사·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
2. 제11조에 따른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
3. 군의 농·특산물 직거래 알선
4.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금산군 생활군민에게 기념품, 상품권 등의 혜택 제공

5. 금산군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
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시설 입장료 등 감면) ① 군수는 금산군 생활군민에게 군에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, 사용료 등을 금산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다.

② 금산군 생활군민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개인정보 보호) ① 군수는 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개인정보 유출, 오·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.

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4조(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 사업의 시행과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금산군 사무의

위탁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(포상)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, 기관·단체 및 개인에게 「금산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 :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 구축 및 운영
 나. 관련 조문 : 생활군민 등록제(안 제8조),
 생활군민에 대한 혜택(안 제10조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생활군민 등록제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
- 생활군민에 대한 혜택 제공

나. 추계 결과(산출기초 등) : 430,000천원 소요

(단위: 천원)

구 분	산출기초	예산액
계		430,000
홈페이지 구축비	300,000천원×1식	300,000
홈페이지 유지보수	20,000천원×1식×4년	80,000
생활군민 인센티브 제공	1,000명×10천원×5년	50,000

다. 재원조달방안 : 지방소멸대응기금(도입 2년차까지) 및 군비

3. 작성자

기획전략국 미래전략과장 이 재 곤(☎ 750-4060)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	310,000	30,000	-	-	-	340,000
세 출		31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430,000
생활군민 등록제 구축		300,000	-	-	-	-	300,000
생활군민 인센티브	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구축에 따른 유지보수		-	20,000	20,000	20,000	20,000	80,000
재원 조달		31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430,000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-	-	30,000	30,000	30,000	90,000
	지방세	-	-	30,000	30,000	30,000	90,000
	세외수입	-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지방소멸대응기금		310,000	30,000	-	-	-	340,000
공기업 특별회계		-	-	-	-	-	-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-	-	-	-	-	-

관계법령

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

제2조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(생략)
2. “생활인구”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다음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사람
 - 나. 통근,통학,관광,휴양,업무,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 - 다.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
제6조(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은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 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(생략)

③(생략)

④(생략)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⑥(생략)

⑦(생략)

제15조(생활인구의 확대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3. 대학·기업·연구소·비영리단체·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·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 단체, 법인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·지원할 수 있다.

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「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」

제13조(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)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·교통·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
2.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1.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

2.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·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

3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

4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·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